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주민자치 공약분석을 위한 질의서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 주민자치 실질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개발되고 경쟁하는 바람직한 환경을 조성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자치 실질화에 대한 이해와 정책개발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리니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의서 답변 내용은 월간주민자치와 유효한 방법을 통하여 유권자에게 효과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1. 후보자

지역구	정당	후보자명
부산 남구갑	정의당	현정길

2. 주민자치에 대한 기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1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필요성/중요성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주민이 지역의 주인입니다.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입니다. 우리는 현재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하고 책임지는 직접민주주의가 보강되어야 하고, 주민자치를 확대함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의 역할은 제도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참여와 주민자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적극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2-2 후보자님이 생각하는 주민자치의 실질화/현실화 방법은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우선은 행정과 의정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판단하고 참여할 폭이 넓어집니다.

이와함께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고, 주민들에 대한 교육기회를 충분히 제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한데, 지역에 거주하나 학교나 일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이들의 참여와, 사회적으로 참여에 제약이 있는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늘 강구해야 합니다.

3.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이중의 관계에 놓이게 됩니다.



정부와의 관계이며 주민과의 관계입니다. 주민과 관계가 없으면 주민회라 할 수 없으며 정부가 지배를 하면 자치회가 될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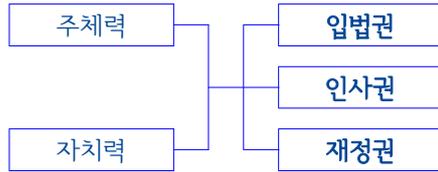
3-1 주민자치회와 주민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구성과 닮은 꼴이어야 합니다. 현실적인 선출방법을 어떻게 할지 지혜를 모으기도 해야겠지만, 가능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별, 직업군, 연령, 경제적 상황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할당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선출된 주민자치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 다수의 의견은 물론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3-2 주민자치회와 정부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는 정부의 말단조직이 아니라, 주민들의 자치조직이 가장 기본을 이루고, 주민들의 일반적인 의지가 반영되는 것이 정부여야 합니다. 정부는 주민자치회의 최대한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지원해야하며, 거꾸로 주민자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민자치회가 자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자치의 주체가 되어야하고 자치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의 주체가 되지 못하면 자치를 할 수 없고 자치의 능력이 없어도 자치를 할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의 주체역량과 자치역량으로 주민자치회는 입법권과 인사권 그리고 재정권을 필요조건으로 합니다.

3-3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칙으로 제정하고 개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입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상위 법률을 위반하지 않는다면 주민자치회는 모든 자치에 대한 권한을 갖고, 자신만의 회칙을 제정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상위법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상위법에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주민들이 의결한 내용이 부정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3-4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대표와 임원을 주민자치회 총회에서 회원들이 선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인사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회칙을 만드는 문제와 마찬가지로, 대표와 임원도 당연히 자율적으로 선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물론 그 선출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더 높은 수준의 민주성과 개방성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3-5 주민자치회는 주민자치회의 운영과 사업에 소요되는 재정(회비, 기부금, 수익 등)을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재정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자치회의 재정도 자체적으로 조달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정권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정기적인 회계보고와 감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 주민들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회비와 기부금 등의 수익으로 인해, 주민들이 참여에 제한을 받거나, 주민자치회의 의사결정이 왜곡되어서는 안됩니다.

재정권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서 그 권한과 의무를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이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마을로 승인하고 주민을 이웃으로 승인하고 지역의 일을 나의 일로 승인하여야 가능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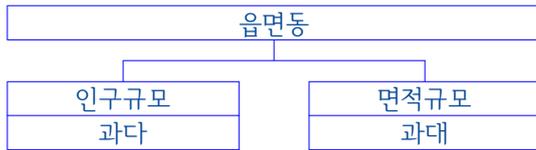
주민이 나의 마을로 승인하지 아니하면 주민자치가 아니며 주민이 이웃으로 승인하지 않아도 주민자치가 아니며 주민들이 나의 일로 승인하지 않아도 주민자치가 아닙니다. 주민자치회가 구역을 대표하여 마을의 공공을 구현할 때 비로소 주민들은 주민자치회를 통하여 구역을 나의 마을로 승인하게 됩니다.

3-6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공공을 실현하는 지역조직으로, 주민의 공공을 실현하는 주민조직으로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표성을 가져야 합니다. 주민자치회의 대표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주민들이 일정한 권한을 가진 주민자치회 회원을 직접 뽑거나 소환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소집과 해산에 관한 권한을 갖는 것도 기본입니다.

또 주민자치회는 지역주민들의 대표로서, 지역주민의 구성과 닮은 꼴이어야 합니다. 가능한 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성별, 직업군, 연령, 경제적 상황 등에 있어서 다양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서는 할당을 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선출된 주민자치회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주민들 다수의 의견은 물론이고, 사각지대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개방적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주민자치회는 무보수 명예직인 대표와 임원이 운영하고 주민들도 무보수 비전임으로 참여를 하여 자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규모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현재의 읍면동의 인구 규모는 주민자치회의 적정규모에 비해서 과다하고 면적은 과대합니다.

3-7 주민자치회를 읍면동 구역에 설치하였을 경우에 무보수 명예직인 주민자치회 대표/임원이 읍면동 구역에서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가를 포함하여 주민자치회의 적정 인구규모와 면적규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현재에도 주민자치회에 관한 다양한 실험들이 시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면적이나 인구수에 관하여서는 동일한 모델을 적용하기보다는 도농을 포함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그 모델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회를 행정계층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읍면동 계층에 설치할 경우 주민자치회와 읍면동이 중복되어 대립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통리가 행정정보조기구의 자격으로 지역을 점유하고 있는 것도 주민자치에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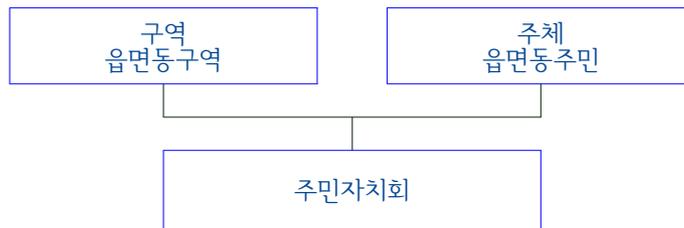
통리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하면 지역밀착형이 가능하지만 이미 통리가 있습니다.

3-8 현행 행정 보조기구인 통·리를 주민이 자치하는 통회, 리회로 혁신하는 것에 대해서 소신있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기존의 통리는 그야말로 행정기관의 최말단으로서 행정의 보조역할을 하고 있고, 기본적인 행정업무는 물론이고, 특히 재난상황을 포함해 실제로 앞으로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과 기능을 주민자치회가 이어받을 수 있을지는 면밀하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여러 겹치는 부분들이 있지만, 통리는 행정조직이고, 주민자치회는 주민들의 자치조직으로서 의정조직에 가깝습니다.

4. 현재 시범실시하고 있는 주민자치회 표준조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특별법, “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제27조(주민자치회의 설치)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다’고 주민자치회의 구역을 읍·면·동으로, 주체를 읍·면·동 주민으로 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표준조례,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표준조례 개정(안)’(이하 표준조례)은 특별법의 ‘읍·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에서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빼버리고 ‘읍·면·동에 두는 주민자치회’라고 규정하고 있다.

4-1 모법인 ‘자치분권법’에서 정한 “ .면·동에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 주민자치회”인데도 불구하고 행안부가 만든 표준 조례에서는 “해당 행정구역의 주민으로 구성되는”을 뺀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견을 주세요.

뺀 것은 거주지는 물론 직장주소 등까지 포함한 것의 관행적 적용이라고 판단합니다. 주민자치회 확대되면 될수록 달라져야 할 부분입니다. 일부러 외부에서 인원을 충원할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다만 행정구역의 주민이 명확하게 주민자치회의 대상임을 규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해당지역의 생활인들, 이를테면 일과시간을 지역에서 보내는 직장인과 상인 같은 경우, 이들의 의견은 어떻게 수렴할 것인지에 대한 방안을 함께 마련하는 것도 성숙한 민주주의 조직에서 고려할만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행안부는 주민자치회 시범실시를 하면서 동자치지원관제도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동자치지원관의 임무는

“주민자치회 운영 사업기획 및 현장 지원, 주민자치회 구성 및 모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촉진, 자치계획 수립 및 운영 기획, 주민자치회 협의·수탁·자치, 업무 기획, 자치구 주민자치활성화 지속화 방안 연구, 주민자치회 회계 지원”이다.

주민자치회가 할 일을 동자치지원관이 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기존의 읍면동장지배에서 이제는 동자치지원관의 이중 지배를 받고 있다.

동자치지원관에게 지원되는 것을 주민자치회에 직접 지원하라는 요구가 많다.

4-2 행안부가 권유하고 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동자치지원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지원관의 도입은 주민자치회에 대한 지원이겠습시다만, 현재의 역할과 필요성을 고려해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5. 주민자치회법안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5-1 행안부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주민자치회 관련하여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¹⁾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중 제25조(주민자치회) 조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큰 논란이 없다면 현재의 개정안을 기본으로 하고, 실질적인 내용을 구성하고, 모델을 만들어나가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5-2 한국주민자치중앙회는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²⁾을 제정하여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발의된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한국주민자치중앙회가 제시한 법률안은 위에서 언급했던 기존 주민자치의 문제점들을 보완하여 주민자치의 자율성, 참여성 강화가 보장되어 있어 긍정적으로 판단합니다.

6. 끝으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에게 하고 싶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주민자치가 민주주의의 기본입니다. 지역사회를 위해 애쓰시는 주민자치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건투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1)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제25조(주민자치회) ① 주민은 풀뿌리자치의 활성화를 위하여 읍·면·동별로 주민자치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주민자치회(이하 “주민자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의 화합 및 공동체 형성
2. 읍·면·동의 행정기능 중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에 대한 읍·면·동장과의 협의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무의 처리
4.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
5. 그 밖에 관계 법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2항 각 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자치회에 대표자 1명을 포함한 위원을 둔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주민자치회의 회원 중에서 지역 내 주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주민자치회가 선정하며, 명예직으로 한다.

⑤ 주민자치회는 그 명의 또는 대표자의 명의로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을 지지·반대하는 등의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주민자치회는 그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운영 및 기능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⑦ 주민자치회는 기능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계하여 주민자치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자치회 또는 주민자치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주민자치회가 규약으로 정한다.

2) 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민자치의 활성화와 주민의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마을”이란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구역의 읍·면·동 안에서 주민이 지역적인 공동활동을 함께 하며 자치할 수 있는 적정구역을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한 구역을 말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2. “주민”이란 마을에 주소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3. “주민자치회”란 마을을 단위로 설립되어 해당 마을의 지역과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회원”이란 주민자치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는 사람으로 회원의 자격과 구분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주민자치회 설립·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주민자치회의 설립 등) ① 주민자치회를 설립하려면 해당 마을 주민의 5분의 1 이상을 발기인으로 하여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창립총회의 의결은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사람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행한다.

② 주민자치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주민자치회는 제11조에 따른 주민총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다른 주민자치회로 분할하거나 다른 주민자치회와 통합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정치적·종교적 중립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정관) 주민자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구역으로 하고 있는 마을
4. 사무 및 사업
5. 사무소의 소재지
6. 회원 자격과 구분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의결정족수 등 회의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재정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규약의 제정·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제7조(설립인가) ① 제5조제1항의 발기인은 창립총회가 끝나면 14일 이내에 시·군·구의 장에게 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시·군·구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가하여야 한다.

1. 설립인가 구비서류를 갖추지 못한 경우
2. 설립의 절차, 정관의 내용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그 밖에 제1항 후단에 따른 설립인가 기준에 미달한 경우

③ 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군·구의 장에게 변경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제8조(주민자치회 임원) ① 주민자치회는 대표자 1명과 감사 2명을 두고, 선출 방식은 정관으로 정한다.

② 그 밖에 임원의 구성에 관해서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표자의 직무 등) ① 대표자는 주민자치회의 모든 사무와 사업에 대해 주민자치회를 대표한다.

② 대표자는 정관에 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주민총회의 의결을 따라야 한다.

③ 대표자는 대표자의 이익과 주민자치회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대표권을 가질 수 없다.

제10조(감사의 직무 등) ① 감사는 회계의 감사와 직무의 감사를 실시한다.

② 감사는 회계나 직무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주민총회에 신속히 보고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대표자에게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고, 대표자가 그 기간 이내에 주민총회를 소집하지 아니하면 직접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11조(주민총회) ① 주민자치회는 매년 1회 이상의 주민총회를 개최한다.

② 대표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민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정관에서 정하는 일정 비율의 회원 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주민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대표자는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④ 주민자치회의 사무 및 사업은 정관에서 대표자 또는 직원들에게 위임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주민은 누구나 주민총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⑥ 주민자치회의 특정 구성원과 관계가 있는 의결의 경우 그 구성원은 표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2조(비치 서류) ① 주민자치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고 갖추어 두어야 한다.

1. 회원 명부

2. 재산 목록

② 주민자치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제13조(재정) 주민자치회는 회비·기부금·보조금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산 및 시설 보유) ① 주민자치회는 그 목적에 따른 사무 및 사업을 위하여 재산 및 시설을 보유하고 운영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는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운용 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5조(해산) 주민자치회는 회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해산한다.

제16조(주민자치회 협의체) ① 주민자치회는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른 주민자치회와 연대할 수 있다.

② 주민자치회 간의 소통·협력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협력을 위하여 읍·면·동, 시·군·구, 시·도 또는 전국 단위의 주민자치회 협의체를 둘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 협의체의 구성과 운영은 규약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7호 중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을 “주민자치회(주민자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민자치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 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각각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8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위원회위원”을 “주민자치회 임원”으로 한다.

제103조제2항 중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2항으로 한다.

① 주민자치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